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1500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택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350,476원과 그 중 382,596,896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8. 3.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21.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207,244원에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현금출납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8. 2.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금액190,000,000원, 보증기간 2018. 8. 2.까지(그 후 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9. 8. 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 3. 20.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23. 3. 20.까지로 정하여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하고, 제1약정과 제2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손해금, 비용, 지연배상금 등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는 2018. 9. 6. 타행(기업은행) 신용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E은행은 2018. 9. 1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8.12. 31. 이 사건 제1약정 관련 대출원리금 182,671,093원 및 이 사건 제2약정 관련 대출원리금 202,114,4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약정손해율은 연10%이다.
-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 관련 대위변제한 금액 중 2018. 12.31. 2,188,64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599원이다.
-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합계 383,350,476원[= 이 사건제1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잔액 180,482,453원(= 182,671,093원 - 2,188,640원) + 이 사건 제2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202,114,443원 + 손해금 599원 + 법적절차비용 752,981원]이다.

다. 증여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B은 2018. 3.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한편 피고 B과 피고 C는 2018. 3. 1. '2018. 7. 31.까지 이혼하기로 하되, 피고B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8. 7.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196,226,080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 채무 외에 872,836,000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며, 피고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8.6. 246,5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0. 21. 배당할 금액

243,474,621원225,267,377원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고, 나머지
잉여금중18,207,244원을 소유자인 피고 C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피고 회사,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350,476원과 그 중
382,596,8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C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고 하더라도, 피고 B과 피고 C의
이혼 당시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반면, 채무는 약 10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증여한 것은 과대한 것이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21.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207,244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고 있고, 혼인기간과 피고 C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참조).

2)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처분행위는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피고 B과 피고 C의 이혼에 따르는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포함된 이혼급부이고, 피고 B과 C 사이의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의 과정,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B과 피고 C는 1998. 3.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8. 7.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들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가 이혼할 당시 피고들의 소극재산은 대부분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이고, 피고 C는 혼인 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 B, C가 가진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다.

다) 피고 B와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도 혼인기간 중 피고 B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피고 C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경우 피고 C와 이혼하되, 아파트와 양육권을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결국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 B와 피고 C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피고 C가 양육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는 외에는 별도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 데, 이혼 당시 위 피고들의 둘째 자녀는 17세의 미성년자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 인해 피고 C가 얻은 이익은 18,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영, 판사 박병곤, 판사 최현정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오산시 F아파트 G동

[도로명주소] 오산시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44.69㎡

2, 3층 440.714㎡

4~19층 438.1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1㎡. 끝.